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2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6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을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7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2(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이하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이라 한다)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3(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우수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

현행법은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서 이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¹⁾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1)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위한 인증제도 외 산업재해 예방활동 진흥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장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2)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3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법」에 규정되는 것은 입법의 목적면에서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범위 또한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³⁾ 개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개정조문이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와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사이에 위치한 것이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인증기업이 이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 활동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545

3)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관련 내용에는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와 같은 정부의 책무적 조항 뿐 아니라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될 수 없는 내용들도 다수 있음.